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09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이병진·서삼석·황 희

권향엽 · 정성호 · 조계원

김성환 · 김영호 · 송재봉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 등의 신청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판별·심사 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자격"을 "자격, 홍보 내용 및 방식, 지원 기준 및 방법"으로한다.

- ⑤ 교육감은 특례자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자가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 ④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교육감은 특례자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		
	례자가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		
	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u>⑤</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⑦</u> <u>제6항</u>		
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			
•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u>자격</u> 등 필요한 사항	<u>자격, 홍보 내용 및</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식, 지원 기준 및 방법		